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3. 14 선고 2023가단980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2. 22.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 2. 27.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065150/102230040 지분에 관하여 1998. 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접수 제114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소유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065150/102230040 지분(갑구 2번)에 관하여, 1998. 2. 27.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6번)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일로 추정되는 1998. 2. 27.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채무자)인 원고에게 2008. 2. 27.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철강재 공급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1998. 4. 20. 원고에게 1,780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로 근저당권설정자인 D과 채무자인 피고의 거듭된 요청으로 경매신청을 미루어 주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사채권인 점을 고려하면 어느 모로 보나 소멸시효 완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별지